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2019. 6. 17.(월) 1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 시 · 교 통 위 원 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 검 토 보 고 서

2019년 6월 17일
전문위원 이 광 희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19 - 42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 출 일: 2019년 6월 3일
- 라. 회부일자: 2019년 6월 11일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비 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관련 의견을 듣고 향후 집행예산 편성 등에 협조를 구하기 위함.

3. 보고내용

-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 총괄현황

구 분	합 계	재정적집행 가능시설		비재정적집행 가능시설	해제유보 시설	해제가능 시설	완료 시설
		건수	사업비(억원)				
소 계	28	13	540	5	6	3	1
도 로	27	12	275	5	6	3	1
공 원	1	1	265	-	-	-	-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인해 시설 1개소 추가

<용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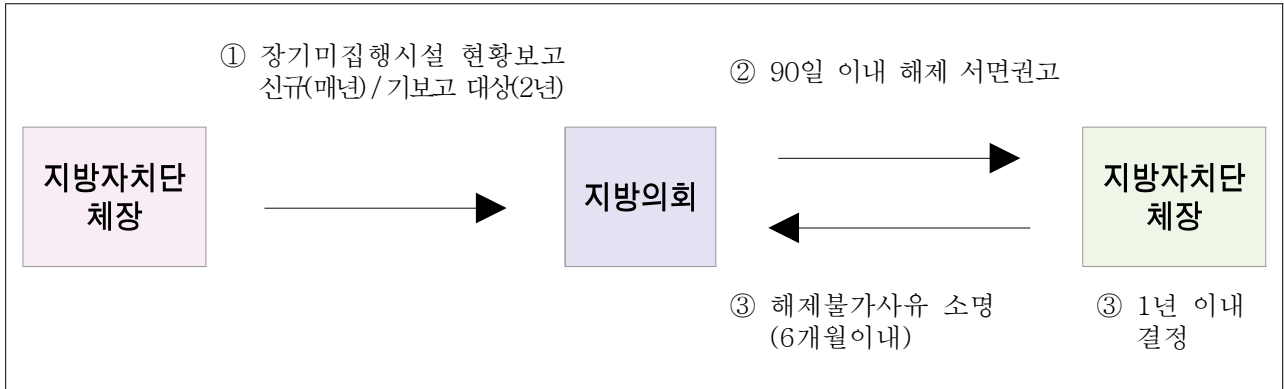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된 경우 자동 실효)
-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실효 전까지 재정 투입하여 집행할 시설
-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민간투자사업 등과 연계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
- 해제유보시설: 존치가 필요하고 재정 미확보로 해제 분류된 시설이나 당장 해제가 곤란한 시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해제 검토중)
- 해제가능시설: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과 대체시설이 있어 즉시 해제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4.12.26)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개정(국토교통부, 2014.6.13)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서울시, 2017.9.21)

나.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 절차



5. 검토의견

가. 보고취지

- 이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회기 중에 시설의 전체 현황,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최초 보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

나. 주요내용

-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7개소, 공원 1개소 등 총 28개소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류.
 -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3개소
 -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5개소
 - 해제유보시설: 6개소
 - 해제가능시설: 3개소
 - 완료시설: 1개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3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3년 내에 구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을 완료 예정이며,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5개소는 향후 민간투자 가능 시설로 분류.
- 방화동, 공항동 일대의 도로 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 해제유보시설로 분류하고 방화동 642번지 및 방화동 648-6번지 일대 도로 1개소는 재정적 집행이 가능하여 보상이 완료된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염창동 및 방화동 일대의 도로 3개소는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이거나 대체시설이 있어 당장 해제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해제가능시설로 분류.

다. 종합의견

- 이 보고안은 강서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여건의 변화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장기미집행 현황 자료 및 관련 법령

붙임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재정적 집행 시설: 2020년 실효 전 시행 예정인 시설(공원 1건, 도로 12건)

우선 순위	위 치	시설 세분	규모(m)		사업비(백만원)			시설결정		현황 도로 여부	미집행 사유	기 분류 내용
			폭원	연장	계	보상비	공사비	고시번호	고시일			
계					53,978	45,957	8,021					
1	화곡동 산99일대 (등마루공원)	근린 공원	면적: 74,299㎡		26,462	23,462	3,000	건고 제138호	1977. 7.14.		예산 부족	해제유보
2	방 화 동 271-1~ 방화동 258-1	소로 1류	10	200	851	278	573	서고 제196호	1976. 8.16.	○	2019년 집행예정	재정적 집행
3	공 항 동 41-44~ 공항동 56-11	소로 3류	6	85	1,309	1,145	164	서고 제288호	1978. 6.15.	일부 개설	2019년 집행예정	재정적 집행
4	방 화 동 322-2~ 방화동 318-3	소로 3류	4~8	126	1,267	1,035	232	서고 제84호	2004. 8.30.	○	2019년 집행예정	재정적 집행
5	공항동 40-8~ 공항동 34-60	소로 2류	8	210	2,601	1,991	610	서고 제171호	1972. 11.23.	일부 개설	예산부족	재정적 집행
6	방 화 동 567-4~ 방 화 동 607-211	소로 1류	10	732	3,128	2,128	1,000	서고 제196호	1976. 8.16.	○	예산부족	재정적 집행
7	가 양 동 146-63~ 가양동 155-5	소로 2류	8	170	1,787	1,379	408	서고 제86호	1977. 3.29.	○	예산부족	재정적 집행
8	등 촌 동 365-105~ 등촌동 364-24	소로 3류	4~6	120	985	816	169	서고 제428호	1978. 8.25.	○	예산부족	재정적 집행
9	염창동 산30-17~ 염창동 산32-1	중로 3류	12	280	343	220	123	서고 제20호	1978. 4.24.	○	예산부족	재정적 집행
10	공항동 46-2~ 공항동 45-62	소로 2류	8	66	1,391	1,227	164	서고 제3호	1969. 1.18.	○	공항지구 중심지구 단위계획 구역	해제유보
11	공항동 44-8~ 공항동 42-30	소로 1류	8~12	212	844	290	554	서고 제3호	1969. 1.18.	○	공항지구 중심지구 단위계획 구역	해제유보
12	방 화 동 621-17~ 방화동 613-94	소로 3류	8	213	4,736	4,140	596	서고 제3호	1969. 1.18.	○	공항지구 중심지구 단위계획 구역	해제유보
13	방 화 동 619-4~ 방 화 동 620-288	소로 1류	9~10	135	8,274	7,846	428	서고 제26호	2000. 2.11.	일부 개설	공항지구 중심지구 단위계획 구역	해제유보

□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 향후 민간투자 가능 시설(도로 5건)

우선 순위	위 치	시설 세분	규모(m)		사업비(백만원)			시설결정		현황 도로 여부	미집행 사유	기 분류 내용
			폭원	연장	계	보상비	공사비	고시번호	고시일			
계					36,320	3,203	33,117					
14	공항동 14-91~ 방화동 609-47	중로 3류	8~14	302	10,205	1,222	8,983	서고 제3호	1969. 1.18.		예산부족	해제유보
15	공항동 3-5~ 공항동 14-82	중로 2류	8~21	163	16,927	1,076	15,851	서고 제3호	1969. 1.18.	○	예산부족	해제유보
16	방화동 620-158~ 방화동 612-20	소로 1류	10	153	1,179	177	1,002	서고 제3호	1969. 1.18.	일부 개설	공항시정경비사업	해제유보
17	가양동 148-2~ 가양동 151-1	소로 3류	6	90	7,907	728	7,179	서고 제86호	1977. 3.29.	○	CT특별계획구역	비재정적 집행
18	방화동 769-22~ 방화동 769-26	소로 2류	8	16	102	0	102	서고 제24호	1999. 6.28.	일부 개설	소유자가부채납 확약	해제유보

□ **해제유보시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해제검토중인 시설 (도로 6건)**

우선 순위	위 치	시설 세분	규모(m)		사업비(백만원)			시설결정		현황 도로 여부	미집행 사유	기 분류 내용
			폭원	연장	계	보상비	공사비	고시번호	고시일			
계					22,132	20,709	1,423					
19	빙화동 612-279~ 빙화동 산7-7	소로 3류	6	76	2,352	2,163	189	서고 제26호	2000. 2.11.	일부 개설	공형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유보
20	빙화동 612-167~ 빙화동 621-33	소로 3류	6	52	1,427	1,296	131	서고 제26호	2000. 2.11.	일부 개설	공형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유보
21	빙화동 612-20~ 빙화동 612-217	소로 3류	6	54	1,920	1,759	161	서고 제26호	2000. 2.11.	일부 개설	공형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유보
22	빙화동 612-20~ 빙화동 612-196	소로 3류	6	71	2,005	1,821	184	서고 제26호	2000. 2.11.	일부 개설	공형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유보
23	빙화동 612-279~ 빙화동 620-124	소로 3류	6	91	3,348	3,141	207	서고 제26호	2000. 2.11.	일부 개설	공형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유보
24	공향동 48-42~ 공향동 45-31	소로 2류	8	110	11,080	10,529	551	서고 제26호	2000. 2.11.	일부 개설	공형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유보

□ **완료시설: 2018년 보상 완료(도로 1건)**

우선 순위	위 치	시설 세분	규모(m)		사업비(백만원)			시설결정		현황 도로 여부	미집행 사유	기 분류 내용
			폭원	연장	계	보상비	공사비	고시번호	고시일			
계					0	0	0					
완료	빙화동 642~ 빙화동 648-6	소로 2류	8	158	0	0	0	서고 제196호	1976.8.16.	○	보상완료 (고시/공고 미이행)	재정적 집행

□ **해제가능시설: 해제 시에도 대체 가능하거나 기능상 문제가 없는 시설(도로 3건)**

우선 순위	위 치	시설 세분	규모(m)		사업비(백만원)			시설결정		현황 도로 여부	미집행 사유	기 분류 내용
			폭원	연장	계	보상비	공사비	고시번호	고시일			
계					1,300	615	635					
해제	염향동 20-46~ 염향동 20-31	소로 3류	6	11	143	143	0	서고 제81호	1974. 6.22.	○	예산부족	해제유보
해제	빙화동 580-4~ 빙화동 578-3	소로 3류	6	135	772	472	250	서고 제196호	1976. 8.16.	○	우선해제시설 분류 (방산시장)	해제유보
해제	염향동 산30-2~ 염향동 112-2	소로 3류	6	174	385	0	385	서고 제81호	1974. 6.22.	X	우선해제시설 분류 (공원 및 신책로)	해제유보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안)

1. 단계별집행계획총괄표

(단위 : 백만원, m²)

구 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5년차)			2단계(6년차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계	18	111,467	90,298	18	111,467	90,298	-	-	-	-	-	-	
도로 (재정적 집행)	12	27,391	27,516	12	35,047	27,516	-	-	-	-	-	-	
공원 (재정적 집행)	1	74,299	26,462	1	74,299	26,462	-	-	-	-	-	-	
도로 (비재정적 집행 가능)	5	9,777	36,320	5	9,777	36,320	-	-	-	-	-	-	

*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 시기 기준

2. 단계별집행계획조서

사업 ·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백만원)	계획기간 중 사업비(2016~2025)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1년~ '3년차		2-1단계 '4년~ '5년차	2-2단계 '6년차 이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소 계			90,298	90,298		53,978	22,854	31,125			36,320		90,298			2020
공원	1	화곡동 산199일대	2019 ~2023	미집행면적 (71,854m ²)	26,462	26,462		26,462	11,731	14,731					26,462			2020
도로	2	방화동 271-1~ 양화동 258-1	2019 ~2020	L=200m B=10m	851	851		851	139	712					851			2020
도로	3	관양동 41-44~ 양향동 56-11	2019 ~2020	L=85m B=6m	1,309	1,309		1,309	548	761					1,309			2020
도로	4	방화동 322-2~ 양화동 318-3	2019 ~2020	L=126m B=4~8m	1,267	1,267		1,267	518	749					1,267			2024
도로	5	관양동 40-8~ 양향동 34-60	2019 ~2020	L=210m B=8m	2,601	2,601		2,601	946	1,655					2,601			2020
도로	6	방화동 567-4~ 양화동 607-211	2019 ~2020	L=732m B=10m	3,128	3,128		3,128	1,064	2,064					3,128			2020
도로	7	가양동 146-63~ 가양동 155-5	2019 ~2020	L=170m B=8m	1,787	1,787		1,787	690	1,097					1,787			2020
도로	8	양촌동 365-105~ 양촌동 364-24	2020 ~2021	L=120m B=4~6m	985	985		985	408	577					985			2020
도로	9	영창동 산30-17~ 산32-1	2020 ~2021	연장 280m 폭원12m	343	343		343	110	233					343			2020
도로	10	관양동 46-2~ 영양동 45-62	2020 ~2021	연장66m 폭원8m	1,391	1,391		1,391	614	777					1,391			2020

사업·시설 부서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백만원)	계획기간 중 사업비(2016~2025)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 계	2-2단 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도로	11	공양향 양향 양향	44-8~ 42-30	2020 ~2021	연장212m 폭원8~12m	844	844	844	145	699				844			2020	
도로	12	방화동 방화동 방화동	621-17~ 613-94	2020 ~2022	연장213m 폭원8m	4,736	4,736	4,736	2,070	2,666				4,736			2020	
도로	13	방화동 방화동 방화동	619-4~ 620-288	2020 ~2022	연장135m 폭원9~10m	8,274	8,274	8,274	3,873	4,401				8,274			2020	
도로	14	공양향 양향 양향	3-5 ~ 14-82	2020 ~2022	연장302m 폭원8~14m	10,205	10,205						10,205	10,205			2020	
도로	15	공양향 방화동 방화동	14-91 ~ 609-187	2020 ~2022	연장163m 폭원8~21m	16,927	16,927					16,927	16,927				2020	
도로	16	가양동 가양동 가양동	148-2~ 151-1	2020 ~2022	연장90m 폭원6m	1,179	1,179					1,179	1,179				2020	
도로	17	방화동 방화동 방화동	620-158~ 612-20	2016 ~2022	연장153m 폭원10m	7,907	7,907					7,907	7,907				2020	
도로	18	방화동 방화동 방화동	769-22~ 769-26	2020 ~2022	연장16m 폭원8m	102	102					102	102				20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